

[별표 25]

수수료 및 교육비(제79조제1항관련)

1.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: 2만원
2.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
 - 가.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: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				수수료(원)		
제 조 소					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	4만원	
					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	5만원	
					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	6만5천원	
			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	7만5천원	
					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	9만원	
저장소	옥내저장소				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	2만원	
					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	2만5천원	
					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	4만원	
			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	5만원	
					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	6만5천원	
	옥외탱크저장소	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외의 것	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			2만원	
	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,000배 이하인 것			2만5천원	
			지정수량의 10,000배를 초과하는 것			4만원	
		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	기초·지반 및 탱크본체의 기술검토	기준공량(100만L 이상 3백만L 미만)			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액
				합 계	탱크본체심사	기초지반심사	
0.250	0.125			0.125			
		기초·지반의 설계심사(고급기술자)	1.250	0	1.250		

			탱크구조등의 설 계 심 사(고 급기술자)	0.833	0.833	0		
			보 고 서 작 성 및 기록관리 (중급기술자)	0.291	0.125	0.166		
		기타 사항 의 심사	용량이 50만 L 이상 100만 L 미만인 것					6만원
			용량이 100만 L 이상 500만 L 미만인 것					8만원
			용량이 500만 L 이상 1,000만 L 미만인 것					10만원
			용량이 1,000만 L 이상 5,000만 L 미만 인 것					12만원
			용량이 5,000만 L 이상 1억 L 미만인 것					14만원
		용량이 1억 L 이상인 것					16만원	
		암반탱크 저장소	기초 · 지반 및 탱크 본체 의 기술 검토	기술인력별 작업구분	기준공량(탱크용량이 4억 L 미만)			엔 지 니 어 링 기 술 진 흥 법 제 10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엔 지 니 어 링 사 업 대 가 의 기 준 의 실 비 정 액 가 산 방 식 을 적 용 하 여 산 출 한 금 액
					합계계	탱크본 체심사	기초지 반심사	
				기술협의 및 서류검토(특 급기술자)	2.000	1.000	1.000	
	기초·지반의 설계심사(고 급기술자)			7.541	0	7.541		
	탱크구조 등 의 설계심사 (고급기술자)			6.541	6.541	0		
	보고서작성 및 기록관리 (중급기술자)		0.500	0.250	0.250			
	기타 사항 의 심사	용량이 4억 L 미만인 것					18만원	
		용량이 4억 L 이상 5억 L 미만인 것					20만원	
		용량이 5억 L 이상인 것					22만원	

	옥내탱크저장소		2만5천원
	지하탱크저장소	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	2만5천원
		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것	4만원
	간이탱크저장소		1만5천원
	이동 탱크 저장소	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· 항공기주유탱크차 이외 의 것	2만5천원
		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, 항공기주유탱크차	4만원
옥외저장소		1만5천원	
취 급 소	주유취급소	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	6만원
		옥내주유취급소	7만원
	판매취급소	제1종판매취급소	3만원
		제2종판매취급소	4만원
	이 송 취급소	특정이송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(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 대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15km 이하인 것	2만5천원
		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km 이하인 것	8만원
		배관의 연장이 15km를 초과하는 것	8만원에 위험 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15km 또는 15km 미 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원을 가산 한 금액
	일 반 취급소	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	4만원
		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	5만원
		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	6만5천원
		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	7만5천원
		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	9만원

비 고

1.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

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2.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기준공량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·직접경비·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·지반 및 탱크본체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가.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

탱크용량(L)	보정 계수	탱크용량	보정 계수	탱크용량	보정 계수
5십만~1백만 미만	0.58	3천만~4천만 미만	4.42	9천만~1억 미만	9.48
1백만~3백만 미만	1.00	4천만~5천만 미만	5.22	1억~1억1천만	9.97
3백만~6백만 미만	1.42	5천만~6천만 미만	6.21	1억1천만~1억2천만 미만	10.06
6백만~1천만 미만	2.36	6천만~7천만 미만	7.36	1억2천만 이상	11.6
1천만~2천만 미만	3.03	7천만~8천만 미만	8.03		
2천만~3천만 미만	3.75	8천만~9천만 미만	8.81		

나.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

탱크용량	보정계수
용량이 4억 L 미만인 것	1.00
용량이 4억 L 이상 5억 L 미만인 것	1.26
용량이 5억 L 이상인 것	1.86

3.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, 직접경비·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.

가. 직접경비 = 직접인건비 × 20%

나. 제경비 = 직접인건비 × 110%

다. 기술료 =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 × 20%

4. 동일한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동일한 2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외의 나머지 탱크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나.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: 가목에 정하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기초·지반 또는 탱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3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

가.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 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: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	수수료
충수검사	용량이 1만 L 이하인 것	1만원
	용량이 1만 L 초과 50만 L 이하인 것	2만원
	용량이 50만 L 초과 100만 L 미만인 것	5만원
	용량이 100만 L 이상인 것	35만원에 10만 L 또는 10만 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수압검사	용량이 100 L 이하인 것	1만원
	용량이 100 L 초과 10,000 L 이하인 것	2만원
	용량이 10,000 L 초과 2만 L 이하인 것	3만원
	용량이 2만 L를 초과하는 것	3만원에 10,000 L 또는 10,000 L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. 다만, 1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.
기초·지반검사		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·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용접부검사		
암반탱크검사		
이중벽탱크검사		
비고		
1. 검사에 필요한 충수·가스충전·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	

2.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3.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II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. 이하 나목에서 같다.

나.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: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

구 분	수 수 료
충수검사	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
수압검사	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수수료와 동일한 액
기초·지반검사	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용접부검사	
암반탱크검사	
이중벽탱크검사	

4.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: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. 다만, 공사가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의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.

가.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: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: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

5.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: 2만원

6.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: 8만원

7.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: 2만원

8.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: 제2호의 규정의 의한

특정옥외탱크저장소·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

9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: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10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

교육과정	교 육 대 상 자	교 육 비
강습교육	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	4만8천원
	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 자	3만2천원
실무교육	안전관리자	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	위험물운송자	
	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	